

연금저축 보험료증액특약Ⅱ

약 관

이 특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(연금계좌 등) 제1항 제1호 “다”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중 보험계약자가 속한 단체(동일한 회사, 사업장, 관공서, 국영기업체,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5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일괄하여 체결하는 단체)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,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에서 정한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

- (1)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으로서 구 소득세법(법률 제11611호, 2013. 1. 1) 부칙 제18조(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 연금계좌로 보는 계약
- (2) 주계약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)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계약(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보험료 납입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)
- (3)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

연금저축 보험료증액특약 II

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1조 (목적)

이 특약은 보험계약(이하 '계약'이라 합니다)과 관련해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"주계약"이라 합니다)에 부가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가. 계약자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가. 보험기간: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
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3조 (특약의 체결 및 소멸)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.

- ② 주계약이 해지(解止)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-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(이하 “산출방법서”하합니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,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 계약자적립액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”과 같이 계산합니다.

제4조 (특약의 보험기간)

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.

제3관 보험료의 납입

제5조 (특약보험료의 납입)

-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② 보험계약자가 속한 단체의 임금인상률 또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 특약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으며,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합한 총납입보험료는 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(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)은 1,800만원 이내로 합니다.

- ④ 계약자가 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속된 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그 때부터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이 특약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,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⑥ 이 특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특약보험료의 처리)

- ① 이 특약의 납입보험료는 “산출방법서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하며, 주계약의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주계약의 연금액을 산출합니다.
- ② 주계약의 연금지급개시 시점에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.1%를 최저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주계약의 연금액을 산출합니다.
-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과 동일한 비율로 하며,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은 주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④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은 이 특약의 순보험료[영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(유지관련비용) 및 계약관리비용(기타비용)을 뺀 금액]를 “산출방법서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⑤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이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

에는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.

제7조 (“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”의 부활(효력회복))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(효력회복)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취급합니다.
- ②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(효력회복) 청약한 것으로 보며, 납입기일, 납입 완료시점, 보험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③ 제2항의 경우 주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(효력회복)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금액(월 공제금액)은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이 특약의 계약관리비용(유지관련비용)은 월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)

- ①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일시중지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납입기일, 납입완료시점, 보험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월공제금액은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납입중지기간 종료에 관하여서는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다만, 이 특약의 계약관리비용(유지관련비용)은 월공제금액에 포

함하지 않습니다.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9조 (계약자의 임의해지)

계약자는 이 특약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제5관 기타사항 등

제10조 (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)

-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-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.